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미화·최혁진·정혜경
양문석·김선민·이정문
한병도·윤준병·이학영
한준호·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건립 및 보존

제11조의5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로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① 공연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모욕 금지)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수행할 수 있다.</u>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 ----- ----- ----- <u>수행하여야 한다.</u>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건립 및 보존</u>
2. ~ 6.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5(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로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u>

<신 설>

대한 명예훼손 금지) ① 공연
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허
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저작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
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신 설>

· 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모욕 금지)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